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가단5136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근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194,3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3. 2. 24. 기준 B에 대하여 357,225,578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 8. 23.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4,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536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직전인 2018. 8. 18.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분양입주권을 266,800,000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7. 이를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전매대금 266,8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B은 위 C아파트 E호에 대한 분양입주권도 보유하고 있다가 2019. 2. 26.경 이를 298,200,000원에 전매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위 분양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 H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9. 4. 3. 합계 140,000,000원에 이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B에게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진만

별지